은행

Sector Issue Brief 2025. 12. 02

Check Point

- 5 개 은행 과징금 2 조원 사전통보
- 감면율 감안 시 자본비율 영향 제한적
- 불확실성 완화국면 진입

ELS 과징금 불확실성 완화

| Analyst **전배승** | bsjun@ls-sec.co.kr

2조원 ELS 과징금 사전통보, 단순 부과기준율 12.4%

▶ 최근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곳의 은행에 대해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. 12/18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별 소명절차를 거치고 그간의 피해배상 조치 등을 감안해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에서 결정됨. 시기는 대략 내년 2~3월경으로 예상

▶ 한편 지난 11.19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'수입 등'의 50% 내에서 부과 가능하며, 투자성 상품인 ELS의 경우 투자액(ELS 판매액)을 의미. 또한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 시 기본과징금의 50%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, 사전예방 노력 등 추가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대 75% 까지도 감면 가능

▶ 언론보도에 따르면 5개 은행 전체의 ELS 판매금액은 16.1조원이며 2조원 사전통보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.4%. 은행별 ELS 판매액은 KB 8.2조원, 신한 2.4조원, 하나 2.1조원이며, 단순비율 적용 시 KB는 1조원, 신한과 하나는 0.3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추정됨

금소법상 감면율 적용으로 실제 자본비율 하락 제한적. 불확실성 완화국면 진입

▶ 제재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경감될 가능성이 높음. 특히 사전통보 대상 은행들은 ELS 손실관련 자율배상 대상자 가운데 96%에 대해 총 1.3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며, 이는 사후피해 회복노력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

▶ 감면율 50%를 가정할 경우 상장 은행지주의 최종 과징금 합계는 1.6조원에서 0.8조원으로 감소함. 보통주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ELS 판매액이 가장 큰 KB를 기준으로 보면 사전통보 과징금(1조원) 기준 -51bp에서 50%~75% 감경 시 13~26bp 하락으로 축소됨

▶ 게다가 최근 금감원장이 과징금 부과로 인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 증가(과징금의 600%만큼 운영 RWA가 증가, 최대 10년)가 생산적금융 추진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적용유예 가능성을 시사. 이 경우 단기적인 CET1비율 하락 영향은 더욱 축소될 것

▶ 제재심의 과정에서 사전통보금액 대비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개연성이 있고, 여기에 감면율을 적용하면 최종 과징금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 있음.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은행권이 인식하게 될 최종적인 손실규모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과징금 관련 우려 및 불확실성은 완화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. 과징금 관련 충당금 비용은 은행별로 25년 4분기 중 일부 설정 예상

▶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은행권의 역할 감안 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과징금과 자본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

그림1 은행(지주)별 ELS 과징금 관련 내용과 보통주자본비율 영향 추정

(단위:십억원,%)		KB	신한	하나	우리
ELS 관련현황	ELS 판매액	8,197	2,370	2,118	41
	사전통보 과징금(추정)	1,018	294	263	5
감면율에 따른 최종과징금 예상	과징금 감면율 30% 적용	713	206	184	4
	과징금 감면율 50% 적용	509	147	132	3
	과징금 감면율 75%(최대) 적용	254	74	66	1
최종과징금별 CET1비율 영향	CET1비율('25.09)	13.83	13.56	13.30	12.92
	감면율 0% 과징금 부과시	13.32	13.41	13.13	12.91
	감면율 30% 과징금 부과시	13.47	13.45	13.18	12.92
	감면율 50% 과징금 부과시	13.57	13.48	13.22	12.92
	감면율 75% 과징금 부과시	13.70	13.52	13.26	12.9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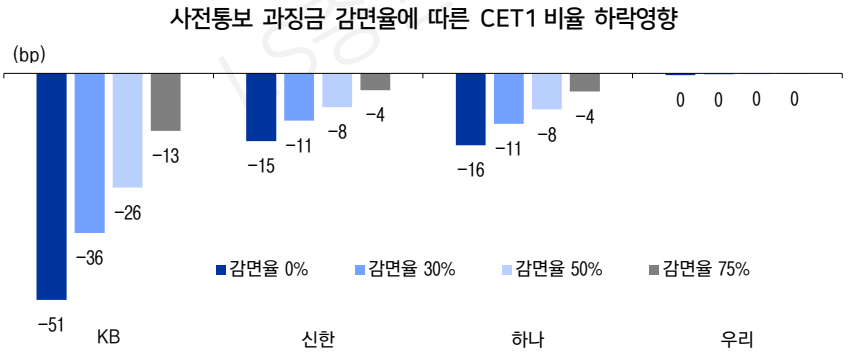

자료: 언론보도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(25.11.19)

구분	내용
Ⅰ. 상품유형별 산정원칙 명시	[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시 상품유형별 '수입등 ' 의 산정 원칙] 예금성: 예금액 / 대출성: 대출액 / 투자성: 투자액 / 보장성: 수입보험료 * 사안별로 이자수입, 수수료 등 포함 여부 판단 가능
Ⅱ.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개편	[금소법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] 중대성: 매우 중대 → 부과기준율(기존) 100% → 부과기준율(신설) 65% 이상 100% 이하 중대성: 중대 → 부과기준율(기존) 75% → 부과기준율(신설) 30% 이상 65% 미만 중대성: 중대성 약함 → 부과기준율(기존) 50% → 부과기준율(신설) 1% 이상 30% 미만
Ⅲ. 과징금 가중&감경사유 마련	(1) 부당이득규모를 고려한 가중사유 마련 (2) 사전예방·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 마련 - 사전예방: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(30% 이내),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충실히 마련·이행(50% 이내) - 사후수습: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(50% 이내: 적극적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력 등) * 2가지 이상 감경기준 충족시 최대 75%까지 조정 가능
Ⅳ. 과징금 추가조정장치 마련	-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 등

자료: 금융위원회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9.4% 10.6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4. 10. 01 ~ 2025. 0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